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문화관광과	1

(2013. 11. 2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김 은 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11월 19일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,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 개정이유 >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5월 재단법인 「마포문화재단」이 새로 설립되면서 2008년 9월 마포아트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만 일부조정하고, 이후 5년간 물가 상승 및 운영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, 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례개정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, 그 밖에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할인규정 마련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였음.
 -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액, 3일 전까지 75퍼센트, 1일 전까지는 50퍼센트를 반환하도록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
 - ※ 소비자 이익을 우선토록 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
(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의 요청사항 반영)
- (2) 안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강습료 등의 반환 규정 개정함.
 -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적용
- (3) 안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 추가 및 할인을 개정함.
 -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- (4) 안 제15조에서는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특정인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음.
 - 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”를 삭제함

- (5)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에서는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조정함.
- 사용료의 징수기준 시간과 상한액을 일부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
[검토의견]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마포아트센터」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한 프로그램 및 강좌 등 사용료징수 기준 중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조례에서 상한액과 하한액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할인규정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와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수강료 환불에 대한 세부규정과 강습료 반환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였고,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고, 세부적인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연상하게 하는 “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”라는 문구는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, 그 밖에 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을 종전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의 징수 기준시간과 상한액을 일부를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규정은 규칙으로 정하였음.
- 그러나 구의회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「마포아트센터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2008년 9월 이후 조례를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점이나,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함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며,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8,768만원의 실질적 수익증대 효과로 마포아트센터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-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,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에 저촉됨이 없고, 2013. 10. 10. ~ 10. 30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근 거

지방자치법(법률 제11690호)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법률 제11690호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 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참 고 자 료

조례개정시 수입증가 예상액

구 분	내 용	증액금액	증 가 사 유
공연전시사업팀	대관료 마포구민 할인(70%=> 30%)	58,880천원	수익 : 58,880천원임
교육문화사업팀	유아체능단 수강료	53,460천원 (-53,460천원)	재료비등 자기부담금으로 같은 금액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질적 수익증대 효과는 없음
생활체육사업팀	헬스 개인지도	72,000천원 (-43,200천원)	조례 개정 후 신설할 프로그램 수익의 60%는 강사료로 지급, 실질적 수익 : 28,800천원임
합 계		184,340천원 (-96,660천원)	실질적 수익증대 예상금액 : 87,680천원임

마포아트센터 사용료 인상(안) 심의결과

○ 시설 사용료 인상(안)-----원안가결

구 분	현 행	사용료 인상(안)		비고
		금 액	인상률	
종합체육관 대관료	120,000원/3시간	50,000원/1시간	25.0%	
다목적홀	80,000원/3시간	30,000원/1시간	12.5%	
연습실	40,000원/3시간	15,000원/1시간	12.5%	
전시실(갤러리맥)	120,000원/9시간	15,000원/1시간	12.5%	

○ 문화강좌·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인상(안)--(보충설명후) 원안가결

구 분	현 행	사용료 인상(안)	비고
생활체육프로그램 (성인)	20,000원~50,000원	30,000원~200,000원	
생활체육프로그램 (중고생이하)	15,000원~40,000원	25,000원~200,000원	
유아체능단	100,000원~200,000원	60,000원~340,000원	

○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(안)----- (보충설명후) 원안가결

구 분	현 행	사용료 인상(안)		비고
		금 액	인상률	
수영 자유이용 1회	1,300원~3,000원	1,500원~4,500원	50.0%	
수영 그룹지도	100,000원~150,000원	100,000원~200,000원	33.3%	
헬스 그룹지도		100,000원~200,000원		신설
헬스 개인지도		30,000원(1시간)		신설
실내골프 정기(월)	80,000원	100,000원	25.0%	
골프아카데미		30,000원~100,000원		신설
실내골프 개인지도		100,000원~150,000원		신설